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 9
----------	------------

제안년월일 : 2018년 9월 7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수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기간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과 가부동수인 경우 등을 피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을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기간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의2제1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1항).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의2제1항 중 “4년마다”를 “3년마다”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18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lt;신 설&gt;</p>	<p>제4조의2(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개인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b>4년</b>마다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p>	<p>제4조의2(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개인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b>3년</b>마다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p>
<p>제11조(위원회의 구성)</p> <p>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b>9명</b>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11조(위원회의 구성)</p> <p>① ----- ----- --- <b>18명</b> 이내 ----- -----.</p>	<p>제11조(위원회의 구성)</p> <p>① ----- ----- --- <b>15명</b> 이내 ----- -----.</p>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개인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제3항 중 “1만”을 “1천”으로 한다.

제10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11조제1항 중 “9명”을 “15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장애인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례 제5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2.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3.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학회가 추천한 사람
5. 전문가,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제3항 중 “행정1부시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한다.

제12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방법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u>제4조의2(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개인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u></p> <p><u>② 기본계획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u></p>
<p>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①·② (생략) ③ 시장은 <u>1만</u>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p>	<p>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1천</u> ----- ----- ----- ----- ----- ----- ----- ----- ----- ----- -----</p>
<p>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p>	<p>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p>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2. (생략)

<신설>

3. (생략)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가운데 2명은 행정1부시장 및 제5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을 위촉할 경우 여성 3명과 장애인 1명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2.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학회가 추천한 사람

-----  
-----  
-----  
-----.

1. 2. (현행과 같음)

3.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15명 이내-----.

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장애인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례 제5조의 개인정보 보호책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⑤ (생략)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략)

⑤ 심의 안건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한다.

<후단 신설>

⑥ ~ ⑨ (생략)

임자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3.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학회가 추천한 사람

5. 전문가,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이 경우 전자적 처리방법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⑥ ~ ⑨ (현행과 같음)